2022. 11.

2022년 자체감사 결과 공개자료

[성암둥지, 성암마루요양원]



김 제 시 기획감사실

처 분 요 구 목 록

성 암 둥 지 , 성 암 마 루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천원)

합 계(지적)			시정						
총 건수	신분상 조 치	재정상 조 치	주의	주의	훈계	개선	권고	통보	비고
7	_	_	2	5	_	_	_	_	둥지
6	-	_	1	5	_	_	-	_	마루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 처분요구서 [별첨 1]

(단위 : 건, 천원, 명)

C4			ш			
연 번	건 명	처분 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비 고	
계	13건		0	0		
1	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정	시정 · 주의				
2	종사자 채용에 관한 사항	시정 · 주의				
3	직책보조비 지급 관련	주의			_	
4	공사계약 업무 부적정	주의			둥 지	
5	후원금 관리 미흡	주의				
6	회계관계직원 부재중 인장 날인	주의				
7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1	회계관직(지출원) 임명 사항과 실제 운영 불일치	주의			마	
2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시정 · 주의			마 루	

G.			ш		
연 번	건 명	처분 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비 고
3	직책보조비 지급 관련	주의			
4	공사계약 업무 부적정	주의			
5	후원금 관리 미흡	주의			
6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일련번호: 1]

김 제 시

기관·부서명 성암둥지

제 목 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정

행정상 조치 시정·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운영위원회) 제1항에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제2항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항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 제36조 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럼에도 성암둥지 요양원은 종사자 대표로 임명된 운영위원 〇〇〇가 2020년 11월 6일자로 퇴직하였음에도 새로운 운영위원으로 변경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성암둥지 요양원에서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시정·주의)

[일련번호: 2]

김 제 시

기관·부서명 성암둥지

제 목 종사자 채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조치 시정·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에 따르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은 시설 포함)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개모집은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work.go.kr), 복지넷(bokji.net),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w4c.go.kr) 중 2곳 이상의 사이트 등에 채용 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토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따라 7일에서 15일 이하로 단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에 따르면 같은 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5항에 따르면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럼에도 성암둥지 요양원은 2018년 이후 10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노인학대 등 종사자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하였고, 3명은 공개모집 하지 않고 지인소개 등의 방식으로 모집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성암둥지 요양원에서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범죄경력 미조회한 재직직원에 대하여 노인학대 등 종사자 범죄경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시정·주의)

[일련번호: 3]

김 제 시

기관·부서명 성암둥지

제 목 직책보조비 지급 관련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4항에 의하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 제15조에 따르면 시설은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0조 [별표 4]에는 세출예산과목 중 직책보조비는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직책보조비는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세출예산과목 상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며, "2018년 3월 7일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에 따르면 직책보조비는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지급 대상은 시설에서 시설장, 관리책임자 등의 직책이 부여된 직원이 직책 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실비 보전성 경비이며, 시설 운영규정에 지급대상, 지급금액을 규정 시 그 근거에 의해 일정 금

액을 매월 지급하나, 다만, 소득세법에 열거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므로. 직책보조비도 과세대상 소득이라고 답변하고 있고.

서울고법(2016 나 2036339)에서는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럼에도 성암둥지요양원은

- ① 직책보조비 예산을 책정하여 지급함에 있어 자체운영규정에 직책보조비를 줄 수 있도록 포괄적 규정만 있을 뿐 직책별 세부지급기준 등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지급한 사실이 있다.
- ② 수감기간인 2017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40,900,000원에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급하면서 직책보조비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성암둥지 요양원은

[일련번호: 4]

김 제 시

기관·부서명 성암둥지

제 목 공사계약 업무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Ⅱ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1.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1-6.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동일구조물공사』및『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하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발주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합 발주 시에는 예산의 재배정(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계약의 위임·위탁(지방계약법 제7조)방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럼에도 성암마루와 성암둥지에서는, 2017년 □□□□□□□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짜에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확정이 통보되었고, 동일 시기에 유사·중복사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사업 계약 또한 분리하여 계약함으로써 통합 발주를 통한 예산 절감 등의 노력 없이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성암등지 요양원은

[일련번호: 5]

김 제 시

기관·부서명 성암둥지

제 목 후원금 관리 미흡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제41조의6(후원 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럼에도 성암둥지 요양원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결과를 시설의 게시판에는 게시하였으나, 시설 홈페이지(블로그) 상 "예·결산 내역"에 결산보고서와 같이 첨부하여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확인이 어려운 점, 후원금 발급 대장과 후원금 발급 영수증이 맞지 않는 점 등 후원금 관리를 미흡하게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성암둥지 요양원은

[일련번호: 6]

김 제 시

기관·부서명 성암둥지

제 목 회계관계직원 부재중 인장 날인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시설의 장은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2조, 제28조에 의하면 지출원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김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 제3항에 의하면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성암둥지요양원에서는 회계 관계 직원이 부재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출결의서상 대리인의 인장이 아닌 부재중 담당자의 인장이 날인되어 지출 관련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성암둥지요양원은

[일련번호: 7]

김 제 시

기관·부서명 성암둥지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별표 10]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르면

-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등
- 133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공과금 :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및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 137 기타운영비 : 시설직원 건강진단비, 그 밖의 복리후생에 드는 비용, 상용의 류비, 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않은 경비라고 명시되어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성암둥지요양원에서는 46건, 1,866,090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과목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성암둥지요양원은

[일련번호: 8]

김 제 시

기관·부서명 성암마루

제 목 회계관직(지출원) 임명 사항과 실제 운영 불일치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4항에 의하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2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에 따르면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제28조(지출의 원칙)에는 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성암마루 시설운영규정」제117조1항에 따르면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럼에도 성암마루 요양원은 2017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는 지출원을 2명

을 임명하고, 2021년 8월부터는 임명한 지출원이 아닌 〈★★〉이 지출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성암마루요양원은

[일련번호: 9]

김 제 시

기관·부서명 성암마루

제 목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행정상 조치 시정·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에 따르면 같은 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다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5항에 따르면 "노인 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럼에도 성암마루요양원은 2018년 이후 24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노인학대 등 종사자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성암마루요양원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범죄경력 미조회한 재직직원에 대하여 노인학대 등 종사자 범죄경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시정·주의)

[일련번호: 10]

김 제 시

기관·부서명 성암마루

제 목 직책보조비 지급 관련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4항에 의하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 제15조에 따르면 시설은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0조 [별표 4]에는 세출예산과목 중 직책보조비는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직책보조비는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세출예산과목 상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며, "2018년 3월 7일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에 따르면 직책보조비는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지급 대상은 시설에서 시설장, 관리책임자 등의 직책이 부여된 직원이 직책 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실비 보전성 경비이며, 시설 운영규정에 지급대상, 지급금액을 규정 시 그 근거에 의해 일정 금

액을 매월 지급하나, 다만, 소득세법에 열거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므로. 직책보조비도 과세대상 소득이라고 답변하고 있고.

서울고법(2016 나 2036339)에서는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럼에도 성암마루요양원은

- ① 직책보조비 예산을 책정하여 지급함에 있어 자체운영규정에 직책보조비를 줄 수 있도록 포괄적 규정만 있을 뿐 직책별 세부지급기준 등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지급한 사실이 있다.
- ② 수감기간인 2017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23,200,000원에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급하면서 직책보조비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누락한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성암마루 요양원은

[일련번호: 11]

김 제 시

기관·부서명 성암마루

제 목 공사계약 업무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Ⅱ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1.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1-6.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동일구조물공사』및『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하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발주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합 발주 시에는 예산의 재배정(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계약의 위임·위탁(지방계약법 제7조)방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럼에도 성암마루와 성암둥지에서는, 2017년 □□□□□□□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짜에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확정이 통보되었고, 동일 시기에 유사·중복사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사업 계약 또한 분리하여 계약함으로써 통합 발주를 통한 예산 절감 등의 노력 없이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성암마루 요양원은

[일련번호: 12]

김 제 시

기관·부서명 성암마루

제 목 후원금 관리 미흡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제41조의6(후원 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럼에도 성암마루 요양원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결과를 시설의 게시판에는 게시하였으나, 시설 홈페이지(블로그) 상 "예·결산 내역"에 결산보고서와 같이 첨부하여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확인이 어려운 점, 후원금 발급 대장과 후원금 발급 영수증이 맞지 않는 점 등 후원금 관리를 미흡하게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성암마루 요양원은

[일련번호: 13]

김 제 시

기관·부서명 성암마루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1. 관계 규정(판단 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별표 10] 노인장기요양기관 의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르면

-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등
- 133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공과금 :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및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 137 기타운영비 : 시설직원 건강진단비, 그 밖의 복리후생에 드는 비용, 상용의 류비, 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않은 경비라고 명시되어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성암마루요양원에서는 35건, 3,603,400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과목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성암마루요양원은